

EDI 특약서

개인 사업자

- EDI 특약서 2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일 3개월 이내]
-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 대표자 개인인감, 대리인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

- EDI 특약서 2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일 3개월 이내]
-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일 3개월 이내]
-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와 하나카드 주식회사(이하 “카드사”라 한다) 간에 신용판매내역 DATA 교환 서비스를 통한 신용판매대금 청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맹점”과 “카드사”간에 체결한 가맹점표준약관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특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특약의 목적은 “가맹점”과 “카드사”간에 신용판매내역 DATA 교환 서비스를 통한 신용판매 대금 청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사항의 규정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특약에 의한 서비스를 적용하는 “가맹점”의 범위는 “가맹점”의 본점 및 향후 개설하는 모든 영업점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이 특약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맹점”과 “카드사”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신용판매방법 및 청구방법)

- ① “가맹점”은 신용 판매 시 모든 거래에 대하여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이하 “카드”라 한다.)의 진위성 여부, 사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카드의 이상 유무를 조회한 후 사용금액을 입력하고 거래승인 번호를 채번하여 이를 매출 전표에 기재한 후 신용 판매토록 하며, 거래의 진위성 및 본인사용 여부의 확인은 “가맹점”의 책임으로 한다.
- ② “가맹점”은 신용 판매 시 카드 임프린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KEY-IN 방식에 의하여 매출을 발생시킬 경우에는 반드시 임프린팅을 하여야 하며, KEY-IN 방식에 의하여 매출을 발생시키고 임프린팅 하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가맹점”의 책임으로 한다.
- ③ “가맹점”은 신용 판매분에 대하여 회원의 카드번호, 매출금액, 판매일자, 거래종류, 거래승인번호 등 거래내역에 관련되는 제반 사항 (이하 “신용판매내역”이라 한다)을 사전에 당사자 간 합의하여 정해진 시간에 VAN사양 ON-LINE 전송 처리한다.
- ④ “카드사”는 VAN사를 통하여 ON-LINE 접수한 신용 판매내역을 매출전표와 동일하게 인정하여 처리한다.

제4조(매출 전표의 관리)

- ① “가맹점”은 “카드사”의 매출 전표를 매출발생일로부터 5년간 보관 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자체 폐기한다.
- ② “가맹점”은 “카드사”가 매출 전표의 열람을 요청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고 “카드사”가 필요에 의해 유선 또는 서면으로 특정 매출 전표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요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매출 전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신용판매대금의 지급)

“카드사”는 “가맹점”의 신용판매대금 청구액에서 사고 매출금액 및 보류금액, 가맹점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가맹점”에 지급한다. 다만, 결제기한 및 방법은 “가맹점”과 “카드사”와 기 체결한 가맹점 표준약관 및 특약에 의한다.

제6조(입금 내역 및 반송 내역 통보)

“카드사”는 “가맹점”의 신용판매내역 중 반송 내역과 입금 내역을 VAN사를 통하여 “가맹점”에 ON-LINE 전송한다.

제7조(손해발생시의 책임)

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책임을 지며, 손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손해배상액의 지급)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 “카드사” 중 그 위반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손해 배상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위반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신용판매대금 등 지급할 금액이 있는 경우 손해 배상금을 차감(상사 법정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 포함)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고객 민원의 처리)

신용 구매한 고객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될 경우 그 원인을 야기한 당사자의 주관 하에 이를 처리하며 “가맹점”, “카드사”간 협조하여 신속히 처리한다.

제10조(부도 반환 등)

- ① 신용판매에 의한 매출 발생 후 당해 카드 회원이 이의를 제기 (매출 사실 부인, 서비스의 하자로 인한 반환 등) 하거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책임하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 ② “카드사”는 “가맹점”이 청구한 신용판매내역 중 제3조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종 청구, 승인 오류, 미 승인 등 대금지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가맹점”에 통보하여 차기 대금 지급액에서 차감 지급하도록 한다.
- ③ “카드사”는 “가맹점”이 청구하는 대금에서 기 발생한 사고매출금액 (분실, 도난 또는 위변조 카드에 의한 매출 금액 등)을 차감하여 지급하며, 차감액 부족으로 인한 손해금은 “가맹점”이 “카드사”의 요청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상환하여야 하며, 7영업일 경과 시 상사 법정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적용한다.

제11조(정보유출의 금지)

“가맹점”과 “카드사”는 이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 고객의 정보 또는 자료에 대하여 상대방 또는 고객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특약의 우선 적용)

이 특약이 가맹점 표준약관과 상호 배치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이 우선 적용되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맹점표준약관이 적용되며, 이 특약과 가맹점표준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및 상 관례에 따라 서로 협의하여 호혜적 차원에서 결정한다.

제13조(특약의 해지)

“가맹점”과 “카드사” 중 어느 한쪽이 이 특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특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

이 특약은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 및 자동 연장은 “가맹점”과 “카드사”간에 체결한 가맹점 계약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제15조(관할법원)

이 특약에 따른 분쟁의 관할 소송은 “카드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이 특약의 증거로 특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가맹점”과 “카드사”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 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카드사]

주소 : 서울 중구 을지로66

상호 : 하나카드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대리인 (인)

[가맹점]

주소 :

상호 :

대표이사 (인)

(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와 하나카드 주식회사(이하 “카드사”라 한다) 간에 신용판매내역 DATA 교환 서비스를 통한 신용판매대금 청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맹점”과 “카드사”간에 체결한 가맹점표준약관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특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특약의 목적은 “가맹점”과 “카드사”간에 신용판매내역 DATA 교환 서비스를 통한 신용판매 대금 청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사항의 규정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특약에 의한 서비스를 적용하는 “가맹점”의 범위는 “가맹점”의 본점 및 향후 개설하는 모든 영업점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이 특약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맹점”과 “카드사”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신용판매방법 및 청구방법)

- ① “가맹점”은 신용 판매 시 모든 거래에 대하여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이하 “카드”라 한다.)의 진위성 여부, 사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카드의 이상 유무를 조회한 후 사용금액을 입력하고 거래승인 번호를 채번하여 이를 매출 전표에 기재한 후 신용 판매토록 하며, 거래의 진위성 및 본인사용 여부를 확인은 “가맹점”의 책임으로 한다.
- ② “가맹점”은 신용 판매 시 카드 임프린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KEY-IN 방식에 의하여 매출을 발생시킬 경우에는 반드시 임프린팅을 하여야 하며, KEY-IN 방식에 의하여 매출을 발생시키고 임프린팅 하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가맹점”의 책임으로 한다.
- ③ “가맹점”은 신용 판매분에 대하여 회원의 카드번호, 매출금액, 판매일자, 거래종류, 거래승인번호 등 거래내역에 관련되는 제반 사항 (이하 “신용판매내역”이라 한다)을 사전에 당사자 간 합의하여 정해진 시간에 VAN사양 ON-LINE 전송 처리한다.
- ④ “카드사”는 VAN사를 통하여 ON-LINE 접수한 신용 판매내역을 매출전표와 동일하게 인정하여 처리한다.

제4조(매출 전표의 관리)

- ① “가맹점”은 “카드사”의 매출 전표를 매출발생일로부터 5년간 보관 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자체 폐기한다.
- ② “가맹점”은 “카드사”가 매출 전표의 열람을 요청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고 “카드사”가 필요에 의해 유선 또는 서면으로 특정 매출 전표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요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매출 전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신용판매대금의 지급)

“카드사”는 “가맹점”의 신용판매대금 청구액에서 사고 매출금액 및 보류금액, 가맹점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가맹점”에 지급한다. 다만, 결제기한 및 방법은 “가맹점”과 “카드사”와 기 체결한 가맹점 표준약관 및 특약에 의한다.

제6조(입금 내역 및 반송 내역 통보)

“카드사”는 “가맹점”의 신용판매내역 중 반송 내역과 입금 내역을 VAN사를 통하여 “가맹점”에 ON-LINE 전송한다.

제7조(손해발생시의 책임)

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책임을 지며, 손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손해배상액의 지급)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 “카드사” 중 그 위반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손해 배상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위반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신용판매대금 등 지급할 금액이 있는 경우 손해 배상금을 차감(상사 법정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 포함)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고객 민원의 처리)

신용 구매한 고객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될 경우 그 원인을 야기한 당사자의 주관 하에 이를 처리하며 “가맹점”, “카드사”간 협조하여 신속히 처리한다.

제10조(부도 반환 등)

- ① 신용판매에 의한 매출 발생 후 당해 카드 회원이 이의를 제기 (매출 사실 부인, 서비스의 하자로 인한 반환 등) 하거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책임하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 ② “카드사”는 “가맹점”이 청구한 신용판매내역 중 제3조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중 청구, 승인 오류, 미 승인 등 대금지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가맹점”에 통보하여 차기 대금 지급액에서 차감 지급하도록 한다.
- ③ “카드사”는 “가맹점”이 청구하는 대금에서 기 발생한 사고매출금액 (분실, 도난 또는 위변조 카드에 의한 매출 금액 등)을 차감하여 지급하며, 차감액 부족으로 인한 손해금은 “가맹점”이 “카드사”의 요청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상환하여야 하며, 7영업일 경과 시 상사 법정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적용한다.

제11조(정보유출의 금지)

“가맹점”과 “카드사”는 이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 고객의 정보 또는 자료에 대하여 상대방 또는 고객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특약의 우선 적용)

이 특약이 가맹점 표준약관과 상호 배치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이 우선 적용되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맹점표준약관이 적용되며, 이 특약과 가맹점표준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및 상 관례에 따라 서로 협의하여 호혜적 차원에서 결정한다.

제13조(특약의 해지)

“가맹점”과 “카드사” 중 어느 한쪽이 이 특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특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

이 특약은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 및 자동 연장은 “가맹점”과 “카드사”간에 체결한 가맹점 계약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제15조(관할법원)

이 특약에 따른 분쟁의 관할 소송은 “카드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이 특약의 증거로 특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가맹점”과 “카드사”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 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카드사]

주소 : 서울 중구 을지로66

상호 : 하나카드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대리인 (인)

[가맹점]

주소 :

상호 :

대표이사 (인)